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산업기술개발사업 융자 지원 등〉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29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수진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7. 31.
3. 회 부 일 : 2024. 8. 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해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출연금 중심의 지원은 정보우위에 있는 기업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 의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정부예산의 경직성으로 출연금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산업기술혁신사업 중에서도 사업화 이전 단계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연금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 외에도 융자형 연구개발 등 다양한 정책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대학,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생략)                                                                                                                                                                  |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현행과 같음)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출연 또는 보조</u> 할 수 있다. | ② -----<br>-----<br>-----<br>-----<br>-----<br>-----<br>-----출연·보조 또는 용자-----. |
| 1. 2.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
| ③·④ (생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u>출연금 또는 보조금</u> 의 지급·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출<br>연금·보조금 또는 용자금-----<br>-----.                                       |

|                                                  |                                                 |
|--------------------------------------------------|-------------------------------------------------|
| 1. · 2.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
| 3.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u>출연금 또는 보조금</u> 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 <u>출연금 · 보조금 또는 융자금</u> -----<br>----- |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을 대부분 출연하고 있음.

그러나 출연금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정부예산의 경직성으로 인해 적기에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정부의 산업기술연구개발 예산을 증액하기가 어려워 R&D 투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출연금, 보조금 외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에서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 기반의 혁신대출, 기술보증을 통한 기술금융 등을 지원 중으로,<sup>1)</sup>

1) 영국은 Innovate UK를 통해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대출형태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SME+ 혁신기금을 통해 혁신적이나 금융조달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2024년도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활용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용자’사업<sup>2)</sup>을 진행 중임.

개정안과 같이 용자지원이 가능하다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기술개발에 대한 용자가 가능하여 자금부족으로 기술개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재원투자에 대한 기업 등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정부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sup>3)</sup>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을 용자할 수 있다면 고위험 신기술 확보가 필요한 분야는 출연으로, 규모가 큰 신산업 추진은 산업기술혁신펀드로, 첨단전략산업 등 기업의 우수 기술력을 담보로 저리 용자하는 등 기업의 특성에 맞추어 좀 더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1

2)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용자

(사업기간) 2024-2027년

(사업예산) 2024년도 900억원, 연간 45개 기업에 대해 R&D자금 20억원 내외 용자지원

(지원대상)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첨단전략산업분야 등 관련 기업의 자금수요에 맞춰 타 정책금융 대비 저리('24.2분기 기준 1.33%)로 알앤디 자금 지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3) 출연은 국가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대상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것이며, 용자는 공공자금을 저리로 대출 후 상환하도록 하는 것임.